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6-94
----------	-------

제출연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출연대상 : (재)마포문화재단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

다.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시설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마포지역 문화 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라. 출연금

-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17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

마. 추진일정

- 2016. 10월 :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수립
- 2016. 10월 :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구의회 의결 요청
- 2016. 10월 : 구의회 의결
- 2016. 11월 ~ 12월 : 예산 심의 및 확정

3.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 재산의 조성) 및 제11조(운영재원 등)